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6

제출년월일 : 1993. 2. 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개정이유

충청북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가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으나 동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1992. 12. 31 법률 제4477호로 제정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명칭 및 위원수를 조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○ 조례명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변경
○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이내로 조정
○ 청소년관련기관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던 것을 청소년사업에 관한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개정

□ 내 용

○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 : 별첨

□ 참고자료

○ 현행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(전문)
○ 관련법규 발췌
  •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
  •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3항, 제4항

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"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"를 "지방청소년위원회"로 한다.

제1조(목적)중 "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"를 "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"로 "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"를 "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제1항중 "15인이상 20인이내"를 "15인이내"로 한다.

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운영) 제1항, 제2항,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①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2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
3.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관리 및 지원
4.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
5.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동조 "제4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제5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제1항중 "20인이내"를 "15인이내"로 한다.

제6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중 1. "심의"를 "자문"으로 한다.

제10조(준용)중 "청소년육성법"을 "청소년기본법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제명 :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	제명 : 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
제1조(목적) 청소년육성법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충청북도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..... 충청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....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2조(위원회구성) ① ....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위원은 교육감 및 경찰국장과 관계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단체, 언론계, 학계, 종교계, 체육계,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	③ ..... 관계행정기관공무원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
제3조(운영) ①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, 단체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. ②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때에는 지역내 청소년유관기관(교육위원회, 경찰국, 검찰청, 지방노동사무소, 농촌진흥원, 보훈지청등)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 ③위원회는 년2회이상 개최한다. ④위원회는 중앙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건전육성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.	제3조(운영) ①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. 1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.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관리 및 지원 4.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.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.....

현 행	개 정
제5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.	제5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①..... .... 15인이내.....
제6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 1.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	제6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 1. 자문..... .....
제1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하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육성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10조(준용)..... 청소년기..... 본법..... .....